

<별지3>

##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심사결과 공개양식

2014년 2월 13일

담당자	연구관	과장
배수영	조창희	서경원

① 신청자	(주)유한양행
② 접수번호	20130178803 (2013.10.31.), 20130170351(2013.10.17.), 20130178833 (2013.10.31.)
③ 제품명	모노로바정5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 모노로바정10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 모노로바정20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
④ 원료약품 분량	1정(154.5mg) 중 로수바스타틴칼슘(별규) 5.20mg (로수바스타틴으로서 5mg) 1정(154.5mg) 중 로수바스타틴칼슘(별규) 10.40mg(로수바스타틴으로서 10mg) 1정(309mg) 중 로수바스타틴칼슘(별규) 20.80mg (로수바스타틴으로서 20mg)
⑤ 효능·효과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: 식이 및 운동으로 조절이 안 될 경우 식이요법의 보조제</li><li>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에 식이요법이나 다른 지질저하요법(예:LDL 분리반출법)의 보조제</li><li>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총콜레스테롤과 LDL-콜로스테롤을 목표 수준으로 낮추어 죽상동맥경화증의 진행을 자연</li><li>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,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가진 만10세-만17세의 소아환자(여성의 경우 초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난 환자)의 총콜레스테롤, LDL-콜레스테롤, 아포-B 단백 수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식이요법의 보조제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90 mg/dL을 초과하는 경우 (<math>LDL-C &gt; 190 \text{ mg/dL}</math>)</li><li>LDL-콜레스테롤이 여전히 160 mg/dL을 초과하면서 (<math>LDL-C &gt; 160 \text{ mg/dL}</math>), 조기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두가지 이상의 심혈관 질환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</li></ul></li><li>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환자의 식이요법 보조제</li><li>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성 감소 : 관상동맥 심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없으나, 만 50세 이상의 남성 및 만 60세 이상의 여성으로 고감도 C-반응단백(high sensitive C-reactive protein, hsCRP)이 2mg/L 이상이며,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추가적인 심혈</li></ol>

	<p>관절환 위험 인자(예 : 고혈압, 낮은 HDL-콜레스테롤치, 흡연 또는 조기 관상동맥 심질환의 가족력 등)를 가진 환자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뇌졸중에 대한 위험성 감소</li> <li>-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성 감소</li> <li>- 동맥 혈관재형성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</li> </ul>
⑥ 용법·용량	<p><b>1.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(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하는 type IIa), 복합형 고지혈증(type IIb) 원발성 이상베타리포프로테인혈증(type III) 및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</b></p> <p>이 약을 투여전 및 투여중인 환자는 표준 콜레스테롤 저하식을 하여야 하며, 이를 치료기간동안 지속하여야 한다.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중 아무때나 이 약을 투약할 수 있다. 초회용량은 1일 1회 5밀리그램이며, 더 많은 LDL-콜레스테롤치감소가 필요한 경우 유지용량으로 조절하여 투여할 수 있다. 유지용량은 1일 1회 10밀리그램으로 대부분의 환자는 이 용량에서 조절된다. 유지용량은 4주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LDL-콜레스테롤 수치, 치료목표 및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야 하며, 1일 최대 20밀리그램까지 증량할 수 있다.</p> <p><b>2. 이형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 소아환자 (만10세 ~ 만17세)</b></p> <p>통상적인 용량범위는 1일 1회 5밀리그램 ~ 20 밀리그램이다. (소아환자군에서 20밀리그램보다 고용량을 투여한 임상자료는 없다.) 투여용량은 개개의 환자에서 권장되는 치료목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절한다. 용량은 4주 또는 그 이상의 간격을 두고 조절하여야 한다. 10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·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.</p> <p><b>3. 노인 :</b>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.</p> <p><b>4. 신부전환자 :</b> 경증 및 중등도 신부전 환자의 경우 용량을 조절 할 필요가 없다. 중증의 신부전 환자에는 투여하지 않는다. 중등도 신부전 환자에게 이 약 20mg 투여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.</p> <p><b>5. 간부전환자 :</b> Child-Pugh 점수가 7이하인 경우에는 로수바스타틴의 전신 노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, Child-Pugh 점수가 8 또는 9인 환자에서는 증가하였다. 이러한 환자에서는 신기능 검사가 고려되어야 한다. Child-Pugh 점수가 9를 초과하는 환자에 대한 투여 경험은 없다. 활동성 간질환 환자에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는다.</p> <p><b>6. 인종 :</b> 아시아계 환자들에게 이 약의 전신노출이 증가하기 때문에, 권장 초기 용량은 5밀리그램이다.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.</p>

	7. 근병증에 걸리기 쉬운 환자 : 근병증에 걸리기 쉬운 환자들의 권장 초기 용량은 5밀리그램이다. 이러한 환자들 중 몇몇에게 이 약 40밀리그램 용량 투여는 금기이다.
⑦ 저장방법 및 사용(유효)기간	기밀용기, 실온(1~30°C) 보관, 제조일로부터 24개월
⑧ 관련조항	·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(식약처고시 제2013-238호, 2013.11.25.) ·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(식약처고시 제2013-237호, 2013.11.25.) ·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(식약처고시 제2013-236호, 2013.11.25.)
⑩ 제출자료	생물학적동등성시험결과보고서 (대조약 : 한국아스트라제네카(주), 크레스토정10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) 비교용출시험자료 (대조약 : 주유한양행, 모노로바정10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)
⑪ 검토결과	적합

\* 참고사항 :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  
로수바스타틴칼슘 :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 [별표1] 상용의약품 [224]

\* 붙임 1.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검토요약 보고서

## <붙임 1>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검토요약 보고서

### <제출자료 목록>

#### ○ 관련규정

- 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(식약처고시 제2013-238호, 2013.11.25.)
-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(식약처고시 제2013-237호, 2013.11.25.)
  - 제17조제2항 및 제7조제2항
-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(식약처고시 제2013-236호, 2013.11.25.)

#### ○ 제출자료 목록

1.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 -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
2. 비교용출시험에 관한 자료 - 비교용출시험자료 (기준 및 시험방법 조건,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조건)

### <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검토 요약>

#### ○ 심사자의 종합적 검토의견

- 신청품목은 의약품의 품목허가·신고·심사규정 제25조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, (주)유한양행 모노로바정 10밀리그램은 공고대조약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(주) 크레스토정 10밀리그램(로수바스타틴칼슘)과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였고, 모노로바정 5밀리그램 및 모노로바정 20밀리그램은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동일 제조업자의 모노로바정 10밀리그램과의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였으며, 검토결과 적합함.

#### 1.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자료

시험약 모노로바정 10밀리그램(주)유한양행과 대조약 크레스토정 10밀리그램(한국아스트라제네카(주))을 2×2 교차시험으로 각 1정씩 건강한 성인에게 공복 시 단회 경구투여하여 36명의 혈중 로수바스타틴을 측정한 결과, 비교평가항목치(AUC<sub>t</sub>, C<sub>max</sub>)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하였을 때, 평균치 차의 90% 신뢰구간이 log 0.8에서 log 1.25 이내로서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하였음.

구분		비교평가항목		참고평가항목	
		AUC <sub>0-48hr</sub> (ng·hr/mL)	C <sub>max</sub> (ng/mL)	T <sub>max</sub> (hr)	t <sub>1/2</sub> (hr)
대조약	크레스토정 10밀리그램 (한국아스트라제네카(주))	102.2±48.9	10.2±4.5	4.1±1.2	8.4±2.2
시험약	모노로바정 10밀리그램 (주)유한양행	105.2±54.0	10.7±5.3	4.3±1.0	8.4±1.8
90% 신뢰구간*		log 0.97~1.09		log 0.93~1.11	
(기준 : log 0.8 ~ log 1.25)				-	

(평균값±표준편차, n=36)

AUC<sub>t</sub> : 투약시간부터 최종혈중농도 정량시간 t까지의 혈중농도-시간곡선 하면적

C<sub>max</sub> : 최고 혈중농도

T<sub>max</sub> : 최고 혈중농도 도달시간

t<sub>1/2</sub> : 말단 소실 반감기

\*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%신뢰구간

## 2. 비교용출시험에 관한 자료

### 1) 유효성분의 선형소실약물동태 입증자료

- 5mg ~ 20mg 용량 범위 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소실 약물동태가 입증되었으므로, 비교 용출시험자료로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의 갈음이 가능함.  
[‘생동성시험을 위한 권고사항(약효동등성과)’ 참조]

### 2) 비교용출시험자료

- 시험약 모노로바정5밀리그램은 대조약 모노로바정10밀리그램과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조건에 따른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였으며, 대조약과 용출양상이 동등함. 이에 따라 해당 자료로서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였음.
- 시험약 모노로바정20밀리그램은 대조약 모노로바정10밀리그램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하였으며, 대조약과 용출양상이 동등함. 이에 따라 해당 자료로서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였음.